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0. 1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10. 1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0. 10. 28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2000년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중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사무 정비와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시 영업구역을 고성군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행계약 체결이 불요하며, 아울러 행정규제적인 성격으로 규제사무 완화 차원에서 삭제함. (안 제6조)
- 나. 규제사무완화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삭제함.
(안 제9조제3항5호,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14조, 안 제15조제3항)
- 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내용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
(안 제8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이중으로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나
- 다만, 안 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조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대행계약 체결을 하지않을 경우 분뇨처리 등에 관한 명령준수 사항 이행과 대행수수료 징구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관할구역 밖의 분뇨의 수집처리시 그 대책과 안 제14조 삭제시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대책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고성군 관할 구역밖의 분뇨의 수집처리시 대응책은
- 답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등의 규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임.
- 문 :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조항 삭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좋은 방안이라 할 것이나 담합, 사기, 부정한 행위와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 답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보며, 분뇨수거 처리업은 요금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수지가 맞는 사업으로 영업자의 담합등은 있을 수 없을 것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0. 10.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